

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(輝度)기준(제41조제2호 관련)

1. 번호등의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번호등은 번호판을 잘 비추는 위치에 설치할 것

나. 작동조건

후미등·차폭등·옆면표시등·끝단표시등과 동시에 점등·소등되는 구조일 것

다. 표시장치

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로 대체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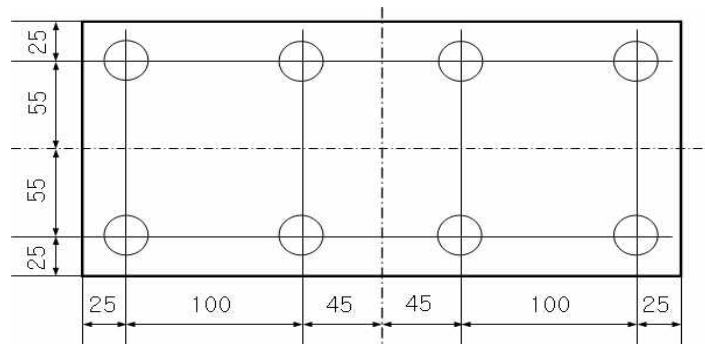
라. 추가 요구사항

번호등이 후미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,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 내에 상호 결합된 경우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동안 변경 가능한 구조도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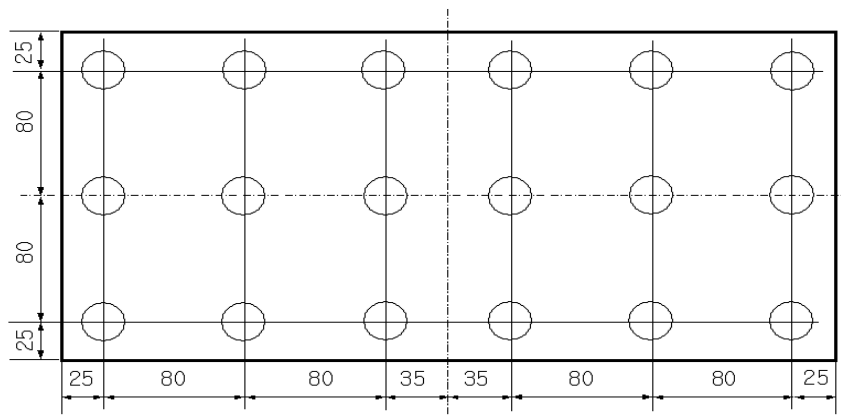
2. 번호등의 휘도기준

가.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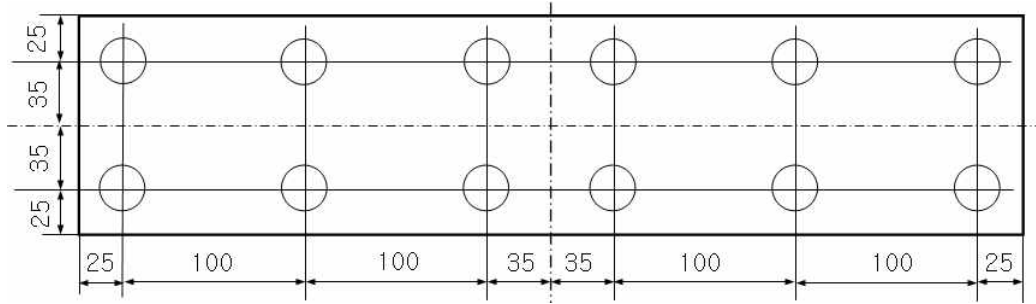
1)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$335 \times 155\text{mm}$ 또는 $335 \times 170\text{mm}$ 인 경우



2)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$440 \times 200\text{mm}$ 또는 $440 \times 220\text{mm}$ 인 경우



3)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520mm×110mm인 경우



주)

1. 단위 : 밀리미터
2. ○ : 휘도 측정점(지름 25밀리미터)

나. 휘도 기준

- 1)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2.5cd/m² 이상일 것
- 2)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(cm)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소휘도값의 2배 이하일 것

$$\frac{B_2 - B_1}{(1, 2 \text{ 측정점 사이의 거리})} \leq 2 \times B_0$$

B_0 = 측정된 최소휘도값

B_1, B_2 =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값

주)

양산자동차 자동차는 나목1)에 ±20퍼센트 이내, 2)에 2.5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. 다만,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나목을 만족해야 한다.

